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6. 20 선고 2017가단238571 판결 [압류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 A

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변론종결 2018. 4. 4.

판결선고 2018. 6. 2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3. 13. 접수 제1052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소속 구청장(이하 '서대문구청장'이라 한다)은 망 B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된 것을 확인하고, 3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, 2012. 1.

4. 망 B에게 이행강제금 256,594,150원(이하 '이 사건 이행강제금'이라 한다)을 부과하였다.

나.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거쳐, 2013. 3. 8. 망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압류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압류처분'이라 한다).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3. 13. 접수 제10527호로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(이하 '이 사건 압류등기'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망 B은 2013. 9. 27. 사망하였고,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

이 사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망 B의 사망으로 당연히무효가 되었고,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히무효로 되었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(대법원 2006. 12.

8. 자 2006마470 결정 참조).

한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는 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촉탁에 의한 말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고,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매받는 것이 아니므로,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된다(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138 판결,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다81,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). 이러한 법리는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과 그 압류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.

2)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, 이 사건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므로,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망 B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. 그런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,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가 망 B의 사망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이라는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그 근거를 잃게 된 것일 뿐이므로,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,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,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진재경

별지